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49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2211212)	2025.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5. 9.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한정애의원 (2213159)	2025.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 11. 2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11.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u></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p> <p>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p>